

민간경비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안 황 권*

<목 차>

- I. 서 론
- II. 민간 자격제도의 개념과 신설절차
- III.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외국사례
- IV. 한국 민간경비 자격의 현황과 방향
- V. 결 론

<요 약>

최근 경비업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영세한 업체의 난립은 결국 저가입찰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이직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해결방안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중의 하나는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자격증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정도를 평가 받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관련 산업계와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이다.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능력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자격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자격소지자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기업에게는 탐색과 교육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민간경비는 경비업무가 다양하고 경비업체의 규모나 수준이 평균화되어 있지 않고 편차가 심하여 고객이나 일반 대중에게 높은 신뢰감과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자격증은 결국 고객을 보호하고 경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민간경비 관련 민간자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민간경비 자격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인 경비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자격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전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비협회, 경비업체, 관련학과 교수 등이 협의하여 직무분석을 한 후, 자격취득 예정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추출하여 자격등급, 점정과목, 점정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

【주제어 : 민간경비, 공인경비자격증, 경비업, 공인자격시험제도, 교육훈련기관】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I. 서 론

민간경비분야에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자격증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정도를 평가 받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능력중심사회에서 전문자격증은 관련 산업계와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이다.

1997년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민간자격증의 홍수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자격증이 발행되고 있으나 민간경비분야에서 자격제도는 취약하고 그나마 개인이나 법인적 없는 단체가 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의 공급 주체인 경찰과 함께 상호 협력과 역할분담을 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그 기본적인 목적인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시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종사자는 고도의 훈련과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능력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자격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확신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는 신뢰로서 작용한다. 또 자격제도는 교육훈련의 결과를 외부로 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자격소지자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기업에게는 탐색과 교육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분야의 민간자격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민간자격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제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민간 자격제도의 개념과 신설절차

1. 자격제도의 개념과 종류

1) 자격의 개념

자격과 관련된 규정은 자격기본법(1997.3.27제정, 법률 05314호)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기본사항, 국가책무, 민간자격의 공인, 자격의 효력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흔히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자격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 등 평가의 과정을 검정(檢定)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란 경호경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법의 목적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자격기본법 제1조).

2) 자격의 종류

자격 종류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비공인 민간자격이 있다.

(1) 국가자격(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국가자격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개선·폐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검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자격에 관한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민간자격의 주체와 공인

① 신설주체 -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民間資格을 新設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법 제15조). 따라서 민간자격이란 국가외의 法人,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법 제2조).

② 민간자격대상의 제한 -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16조).

③ 민간자격의 공인- 민간자격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법 제17조).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공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신청을 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발원장은 심의회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당해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21조).

④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 공인받거나 변경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법 제27조).

2. 신설절차

첫째, 자격의 수요조사를 한다. 즉 (사)한국경비협회 산하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경비산업계의 요구와 수요를 조사하고 미래 예측을 통하여 전망한다. 민간경비원과 관련되는 국가자격 종목은 중복이 없으므로, 기타 유사 민간자격 제도와 관계를 설정하면 된다.

둘째,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즉 경비업체, 한국경비협회, 한국경호경비학회 등의 학회, 경호경비 관련 학과 교수 등과 협의하여 민간경비 민간자격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이 직무분석을 통하여 자격취득 예정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추출하여 자격검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셋째, 자격등급 및 시험응시 대상자에 대한 제한 유무와 준거 틀을 결정한다. 등급 구분시 국가자격과의 호환 및 학점인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로 설정한다. 등급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단계별로 능력 수준이 투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위 등급은 하위등급보다 명확하면서 포괄적이고 고수준이어야 한다. 등급은 단계별로 구조화되도록 한다. 즉 하위 단계에 대한 자격 획득이 상위 단계의 자격 획득으로 이어져 개인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검정 응시자의 자격과 응시자의 학력에 대한 제한 여부와 경력인정 등에 대한 사항의 준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검정과목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경비업체, 경비협회, 경비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자격 검정을 위한 과목 및 방법을 선정하고 개발하도록 한다.

검정과목과 방법은 현장 적합성 및 타당성, 교육훈련과정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제공하며 자격검정시 과목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준거를 마련한다.

여섯째, 자격검정을 위해 필요한 시험문제 출제위원과 시험관리감독위원, 채점위원 등의 인력을 경비업체, 경비협회, 경비관련 학회, 경호경비 교육훈련기관 등에 선발하여 활용한다.

일곱째, 자격시험의 출제기준과 범위 및 방식을 결정한다. 즉 검정과목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 범위와 수준을 해당 자격종목의 산업현장 직무내용에 부합하도록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을 정한다.

출제기준은 산업사회의 기술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 현장에서 직무 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시안을 마련하며, 학계 및 경비업계의 전문가 검토 의견을 수렴한 후 작성되어야 한다.

여덟째, 자격검정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검정에 관련된 인력 위촉 사항이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시험문제 보안, 검정시설 및 장비 상태 확인, 검정기간 점검, 검정 응시 절차, 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확인·점검하도록 한다.

아홉째, 자격검정을 실행한다.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의 배포, 회수 방법, 답안지 작성 방법, 부정행위자 처리 요령 등의 운영 사항과 감독위원의 유의 사항에 대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정시행 후에는 시험본부에 시행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검현황, 시험위원 위촉 현황, 부정행위자, 수검상이자 명단, 예산집행 현황, 특기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끝으로 채점을 실행하고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Ⅲ.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외국사례

1.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필요성

1) 치안환경의 변화

오늘날 각종 범죄가 양적으로 급증하고 질적으로 심각성을 띠고 있다. 우선 양적으로는 범죄발생건수가 2000년에 1,739,558건, 2001년 1,860,687건, 2002년 1,833,271건, 2003년 1,894,76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지능화, 고도화, 흉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강도범죄, 사기범죄, 사이버범죄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분담과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경비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비업체는 우선 재능과 능력, 전문성을 가진 경비원들을 선발하고 나아가 끊임없는 교육·훈련 및 조직학습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경호·경비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2) 민간경비원의 전문화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된다는 것은 시민의 자주적인 방범·방재활동 등이 강화되어 충실하게 되는 것은 시민 생활안전을 유지해 가는데 매우 유용한 일이다.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안전 담당자의 전문성과 공신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자격증 등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3) 민간경비업체의 신뢰성

민간경비업은 고객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일체의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경비업체가 고용한 경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과 직접 대면 또는 면전에서 활동하는 경비원의 자질이나 능력이 바로 그 회사의 평가기준이 된다.

고객에게 경비원의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2명의 경비원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점정절차를 거친 자격증을 지니고 표시장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격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를 더 선호하고 신뢰하겠는가?

경비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받고 인정을 받아 표시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고객에게 심리적 안정과 신뢰감과 든든함을 줄 것이다. 나아가 그 회사자체를 신뢰하고 선호하게 될 것이다

4) 종사자의 지속적인 실력 배양

일반적으로 자격증은 국가자격과의 호환 및 학점인정 등을 고려하여 다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등급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단계별로 능력 수준이 투명하게 설정되게 하여, 상위 등급은 하위등급보다 명확하면서 포괄적이고 고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은 단계별로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경호·경비분야의 종사자들은 하위 단계에 대한 자격 획득이 상위 단계의 자격 획득으로 이어져 자신의 직업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게 된다.

5) 경비산업의 활성화

산업의 발달과 함께 사회는 다양화·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직업과 직종이 생겨나고 유망직종의 생명도 짧아지고 있다.

직업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대 유망직업과 신종직업”을 선정하였다. 임금 수준과 안전성, 고용창출, 유연성, 직업가치, 근무환경, 직업전문성 등 7개 평가항목으로 선정한 ‘2005년 10대 유망직업’으로 정보보안전문가가 1위를 차지했다. 10년뒤 각광받을 유망직종으로는 경비경비산업과 관련해서 10위권에 3개가 자리 잡고 있다. 1위는 인터넷사용인구가 늘면서 익명성을 무기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범죄를 막고 지킬 수 있는 ‘사이버경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4위에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 여행, 식사, 병원길을 챙겨드리는 실버시터(Silversitter), 10위에는 도청방지전문가가 차지하였다(조선일보, 2005.6.21).

경호경비산업은 향후 유망한 산업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

문자격을 신설하여 우수한 인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의 민간경비 자격제도

1) 미국

다양한 역사와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가를 이루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자격제도를 직접적이고 확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미국의 자격제도는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는 주로 민간부문, 자치단체 등의 자율에 의한 규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김철수, 2004:36). 다만 건강 관련부문, 안전부문과 같은 소수의 영역은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자격제도의 개발이나 통용 등은 업계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자격증의 종류는 크게 면허, 민간자격, 등록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면허는 주정부나 연방 정부의 주도로 개발되고 고용에 있어 자격증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자격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할 조건이다. 면허는 보통 정규교육 요건과 현장경력에 더하여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면허를 가진 개인만이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그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면허는 업종보호와 직함보호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민간자격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민간기구에 의해서 자격검정이 시행되어 왔다. 등록은 직함보호를 위해 쓰여 지는 것인데, 보통 관장하는 정부기구나 민간기구에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덜 까다롭고 일반인의 보호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김철수, 2004:37).

미국에서 시큐리티 관련 자격증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⁹⁾ 전문적인 자격증을 요구하는 주요한 목적은 바로 고객 보호에 있다. 특히 민간경비는 경비업무가 다양하여 경비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뢰성과 만족감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자격증을 갖춘 전문경비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경비업체 또는 경비원이 보유한 최소한의 자격기준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비서비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이윤근, 1999:320).

시큐리티부문과 관련하여 약 38개(75%)의 州가 민간경비와 경비원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규제하고 있다. 거기다가(또는 주의 규제에 대신하여) 기초자치단체(municipal or county governments)가 민간경비를 규제하는 조례(ordinances)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주정부의 규제활동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시큐리티 사업과 경비원 규제에 더하여 약 2,0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기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William C. Cunningham, John J. Stauchs, Clifford W. Van Meter, 1990:153-154).¹⁰⁾

9) 시큐리티 자격제도에 관한 법의 규제는 자주 변경되므로 지방정부나 주정부의 규제에 대한 요구기준의 전체적인 상황을 기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William C. Cunningham, John J. Stauchs, Clifford W. Van Meter, 1990:154).

<표 1> 미국 각 주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증 제도

| 구분 | 경비·순찰 (Guard and Patrol) | 경비사업의 자격증화 (Licensing of Businesses) | 등록 (Registration) | 사실탐정 (Private Investigators) | 경보 (Alarm) | 무장 호송차량 (Armored Car) |
|-------|-----------------------------|---|----------------------|------------------------------------|---------------|--------------------------|
| 채택한 州 | - | 39 | 25 | 37 | 25 | 9 |

* 자료 : Willam C. Cunningham, John J. Stauchs, Clifford W. Van Meter,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II*(Butterworth-Heinemann, 1990), p.153.

태평양 북서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imonsen, 2000:39-41).

- ① 알라스카주-州 면허는 없으며, 개인탐정과 공공기관의 다른 멤버 간에 차이가 없다.
- ② 이다호주-州 면허는 없음, 이다호 카운티나 시 등은 면허요구조건을 가지고 있고, 총기를 다루는 사람은 카운티 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오래곤주-州 면허는 없으며, 대신 면허는 카운티나 시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총기를 다루는 사람은 법에 따라야 한다.
- ④ 워싱턴주-州 면허를 요구하며, 카운티나 시에서는 제한된 규율, 사전 담당업무를 맡기전 4시간의 훈련과 테스트가 부과된다. 무장경비원에대한 훈련과 한정된 자격을 요구한다. 무장을 하지 않는 경비원은 최소 18세 이상 되어야 한다 무장경비원은 21세가 되어야 한다.
- ⑤ 캘리포니아주-주 면허가 필요하고, 결격자는 허용이 안되며, 카운티나 시에서는 사업상 세금과 제한된 규율, 체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2시간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경봉, 가스총, 마약건 혹은 다른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비원도 필기, 구술 시험을 볼 수도 있다. 총기를 사용하는 경비원은 강의실에서 최소한 14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⑥ 플로리다주-주 면허가 필요하며, 지문검사와 결격자는 허용 안된다. 카운티나 시당국은 사업상의 세금만을 부과한다. 주정부는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도입 한다. 1991년 10월부터는 16시간의 강의실 수업을 요구하고 있다. 강의실 훈련이 최소한 40시간이 될 때까지 2003년10월까지 2년마다 4시간의 교육훈련이 추가된다. 무기소지허가는 24시간훈련을 요구한다. 8시간은 자격훈련이 될 수 있다. 1992년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1998년까지는 4시간이 추가되고 48시간이 될 때까지는 2년마다 4시간씩이 추가된다. 무기를 소지한 자는 4시간의 재교육이 요구된다. 주정부는 4년을 임기로 11명의 민간경비협회에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1명의 위원은 재판소에 관련 있는 사람이거나 법집행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1명은 면허를 가지고 경비업을 하는 회사대표이어야한다. 그리고 나머지위원은 주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2명은 경비회사(20명 혹은 더 적은 수를 고용한 회사)의 대표 여야한다. 2명은 사실탐정(5명이나 그 이하요원을 가진 회사)회사

10) 이러한 영향으로 예를 들면 미주리주 St. Louis시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비원이 1959년 819명, 1975년 2,977명, 1989년 4,322명이다. 이 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경찰관의 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격증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일관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Willam C. Cunningham, John J. Stauchs, Clifford W. Van Meter, 1990:138).

대표 여야 한다. 회사대표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위에서 명시한 14-40시간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만약 그들이 무장을 한다면 그들도 무기소지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⑦ 일리노이주-주면허가 요구된다. 카운티나 시당국은 규율할 권한이 없다. 지문검사와 결격자는 허용 안되며, 경비원이 채용되면 처음 3달 동안은 20시간의 강의를 받아야 한다.

무기를 소지한경비원은 사격술과 추가 교육을 40시간 더 받아야한다. 주정부의 경비과 과장은 4년의 임기로 9명의 위원을 지명해야한다. 3명은 기계경비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1명은 경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되며 위원회는 검토와 권유를 한다.

⑧ 뉴욕주-경비원이나 관계직원은 지문검사를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새로운 훈련은 요구하지 않으며 무기는 카운티나 시에 의해 규율된다.

⑨ 텍사스주 : 주면허가 필요하며, 카운티나 시당국은 규율할 권한이 없다. 30시간교육과 총사용자격이 필요함 모든 경비원은 경비원으로 임명될 소속이 있어야 한다. 만일 무기를 사용할 직책은 신체 테스트 및 심리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주지사는 10명의 텍사스 위원회에 사설 탐정, 경비원들을 임명해야한다.

자격증 중 권위 있는 것으로는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가 있다. CPP는 미국 산업경비협회(ASIS: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에서 1977년부터 실시하는 자격제도로써 경비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8,200(현직에서 활동하는 수는 4,000명)명이 넘는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일년에 약 900명 정도가 응시하여 66%-72%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최선태, 2000:42).

응시자격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즉, 1)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9년간 안전분야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이 중에서 2년간은 안전업무 책임자로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2)전문 학사학위를 가진 경우나 전지역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의 졸업증서를 가진 경우에는 7년간의 안전분야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이 중에서 2년간은 안전업무 책임자로서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3) 전 지역에서 인정된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의 학사학위를 가진 경우에는 5년간의 안전분야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이 중에서 2년간은 안전업무 책임자로서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4) 전지역에서 인정된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의 석사학위를 가진 경우에는 3년간의 안전분야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이 중 2년간은 안전업무 책임자로서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5) 전지역에서 인정된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의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에는 2년간의 안전분야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이 모두를 안전업무 책임자로서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CPP 시험은 9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즉, 1)물리적 안전-종업사와 방문자의 통제, 경보, 장벽, 시설계획, 안전순찰과 무기, 물질의 통제, 기계적·전기적·전자적 장비와 장치, 주변 경계, 출입구와 로비, 보안등, 보안조사, 주차, 교통통제, 교신, 보안수송(시험출제 비율 20%), 2)조사-조사의 자원, 조사방법, 조사의 보고 및 결과, 조사의 형태(시험출제 비율 18%), 3) 손실예방-위험의 측정, 조치, 정책(시험출제 비율 12%), 4) 관계-외부와의 관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시험출제 비율 5%), 5) 비상계획-실행, 계획의 개발, 비상-의 형태들(시험출제 비율 6%), 6) 안전관리-대응책의 선택, 재

정관리, 관리체계, 기획, 조직, 지도 및 연락방법의 관리, 취약성 평가, 손실예방, 관계, 물질의 낭비(시험출제 비율 34%), 기밀정보의 보호-통제, 인식, 민감도(시험출제 비율 6%), 7) 물질의 남용-인식과 남용자의 배제, 예방계획, 해결의 방법(시험출제 비율 6%), 8) 개인 안전-고용의 선택과 보유 기준, 정보의 평가, 선별기술, 안전 경고 계획들, 징계적인 조치(시험출제 비율 9%), 9) 법적인 측면-미국과 캐나다의 시험 지원자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나라의 법률적 측면에 관해 추가적인 25 문항의 질문에 답해야 하므로 총225문항의 시험문제가 출제된다. 즉 행정부와 관리기관의 요구사항, 시민의 책임, 불법행위, 시민의 권리와 공정한 고용, 계약시 고려할 사항, 범죄, 형법상 절차들과 형사상의 조직, 정당한 법의 절차와 헌법상 소추의 면책(시험출제 비율 7%) 등이다((최선태, 2000:47-48).¹¹⁾

이와 같은 자격증제도는 시큐리티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립된 것으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과 관련된 규정사항에서는 자격증 지원자, 유자격 회사, 자격증소지에 있어서 변경의 고지, 자격증 갱신, 자격증 증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자격증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적절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이윤근, 1999:319-320).

2) 일본

일본의 시큐리티 관련 자격제도는 경비원 검정제도,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 기계경비업무 관리자 등이 있다.

(1) 경비원 검정제도

경비원 검정제도는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여 합격하는 자에게 1급, 2급의 민간경비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본 경비업법 제11조의 2는 “공안위원회는 경비업무의 적절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그 종별에 따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것에 의해 경비원 또는 경비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식 및 능력에 관한 검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검정의 종별

검정은 경비업무의 종별을 특정하여 그 종별에 종사할 경비원의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한다. 따라서 현재 업무의 중요성(공공성) 및 수요의 多寡를 감안하여 검정규칙 제1조에 정한 5개의 종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① 공항보안경비

하이잭크나 폭발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내에 반입되는 수하물 등에 대하여 행해지고 있

11) CPP의 합격기준, 장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선태(2000, 43-51)를 참조할 것.

는 X선투시검사, 금속탐지검사 등의 업무에는 고도의 지식 및 능력이 하며 또한 부적절한 업무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가 생길 우려가 많으므로 검정 종별로 채택되었다.

② 상주경비

빌딩, 백화점 등의 각종 시설에 상주하여 행해지고 있는 출입관리, 기기에 의한 경계, 감시활동 등의 업무에는 고도의 지식 및 능력이 필요하며, 판단 등을 잘못된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가 생길 우려가 많으므로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할 필요성 때문에 검정의 종별로 채택되었다.

③ 교통유도경비

공사현장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차량유도 등의 업무에는 고도의 지식 및 능력이 필요하며, 법령의 미숙지 등에 의해 교통의 원활함을 방해하거나 또는 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정의 종별로 채택되었다.

④ 핵연료물질 등 운반경비

핵연료물질 등의 위험물 운반경비에는 고도의 지식 및 능력이 필요하며, 또한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정의 종별로 채택되었다.

⑤ 귀중품 운반경비

현금 등의 귀중품운반경비에는 고도의 지식 및 능력이 필요하며, 또한 강도 등의 범죄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할 필요에서 검정의 종별로 채택되었다.

(나) 검정의 구분

검정은 취업제한 등의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경비원의 지식이나 능력향상에 관하여 자주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 자주적인 노력을 가져오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검정규칙 제1조제2항).

(다) 검정방법(검정규칙 제2조)

검정은 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지식 및 능력에 대하여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의해 판정한다.

다음의 지정강습을 받아 그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당해 지정강습에 관계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수험하는 것에 의해 수검하는 방법과

② 국가공안위원회가 지정강습으로 지정한 강습의 과정을 수료하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수검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라) 학과시험(검정규칙 제3조)

<표 2> 일본의 1급 검정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과목

| 경비업무 종류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
| 공항보안경비 | 학과시험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것 |
| | | 승객등의 接遇에 관한 것 |
| | | 수하물 등 검사에 관한 것 |
| | 실기시험 | 공항보안검사업무의 관리에 관한 것 |
| | | 항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물건 등을 발견한 경우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승객 등의 대우에 관한 것 |
| | | 수하물 등 검사에 관한 것 |
| 상주경비 | 학과시험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것 |
| | | 경비업무대상시설의 보안에 관한 것 |
| | | 상주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것 |
| | 실기시험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보안에 관한 것 |
| | | 상주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것 |
| |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교통유도경비 | 학과시험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것 |
| | | 차량 등의 유도에 관한 것 |
| | | 교통유도업무의 관리에 관한 것 |
| | 실기시험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차량 등의 유도에 관한 것 |
| | | 교통유도업무의 관리에 관한 것 |
| | | 사고 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핵연료 물질 등 운반경비 | 학과시험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것 |
| | | 핵연료물질 등에 관한 것 |
| | | 차량에 의한 동반주행 및 주위 경계에 관한 것 |
| | 실기시험 | 핵연료물질 등 운반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것 |
| |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차량에 의한 동반주행 및 주위 경계에 관한 것 |
| | | 핵연료물질 등 운반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것 |
| 귀중품운반경비 | 학과시험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사항 |
| | | 귀중품운반경비업무용 차량 및 차량에 의한 동반주행 및 주위 경계에 관한 것 |
| | | 귀중품운반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것 |
| | 실기시험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귀중품운반경비업무용차량 및 차량에 의한 동반주행 및 주위 경계에 관한 것 |
| | | 귀중품운반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것 |
| |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표 3> 일본의 2급 검정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과목

| 경비업무 종류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
| 공항보안경비 | 학과시험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것 |
| | | 승객등의 接遇에 관한 것 |
| | | 수하물 등 검사에 관한 것 |
| | | 공항에 관한 것 |
| | 실기시험 | 항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물건 등을 발견한 경우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승객 등의 接遇에 관한 것 |
| | | 수하물 등 검사에 관한 것 |
| 상주경비 | 학과시험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것 |
| | | 경비업무대상시설의 보안에 관한 것 |
| |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보안에 관한 것 |
| | 실기시험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것 |
| 교통유도경비 | 학과시험 | 차량 등의 유도에 관한 것 |
| |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것 |
| | | 차량 등의 유도에 관한 것 |
| | 실기시험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차량 등의 유도에 관한 것 |
| | | 사고 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핵연료 물질 등 운반경비 | 학과시험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것 |
| | | 핵연료물질 등에 관한 것 |
| | | 차량에 의한 동반주행 및 주위 경계에 관한 것 |
| |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실기시험 | 차량에 의한 동반주행 및 주위 경계에 관한 것 |
| |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귀중품운반경비 | 학과시험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사항 |
| | | 귀중품운반경비업무용 차량 및 차량에 의한 동반주행 및 주위 경계에 관한 것 |
| |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실기시험 | 귀중품운반경비업무용 차량 및 차량에 의한 동반주행 및 주위 경계에 관한 것 |
| | |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에 관한 것 |
| | |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 | 법령에 관한 것 |

경비원 등의 검정제도는 1986년에 시작된 이래 都道府縣공안위원회가 학과시험 등을 시행하는

방법(직접검정)과 (사)전국경비업협회 및 (재)공항보안사업센터가 시행하는 지정강습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하는 방법이 있다.

2004년말 12월말 현재 검정취득자 수의 누계는 <표 4>와 같다. 즉 1급검정취득자는 6,325명, 2급검정취득자는 106,838명이다. 전체경비원중 1급검정취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3%, 2급검정취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2.5%이다.

<표 4> 일본 경비업무별 검정취득의 현황(2004.12. 31 현재)

| | 공항보안 | 상주 | 교통유도 | 해연료물질 등 운반 | 귀중품운반 | 계 |
|----------|-------|--------|--------|---------------|--------|---------|
| 1급검정취득자 | 1,513 | 681 | 2,250 | 0 | 1,881 | 6,325 |
| 2004년취득자 | 285 | 216 | 301 | 0 | 170 | 972 |
| 2급검정취득자 | 4,551 | 16,210 | 73,498 | 376 | 12,203 | 106,838 |
| 2004년취득자 | 823 | 3,347 | 7,197 | 9 | 900 | 12,276 |

* 자료: (社)全國警備業協會(2005). Security Time, vol.311(2005.7)

(2)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

(가) 취지

경비업무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이며, 이것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원이 경비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비업자에게 지도교육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러나 경비업자 자신은 구체적인 경비업무의 실시에 대하여 반드시 충분한 지식 및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식 및 능력은 있어도 경비업자 자신이 구체적인 경비업무의 실시에 즈음하여 세세한 지도교육을 하는 것은 실제로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교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해 업무에 관한 지식 및 능력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 지도교육의 책임자로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의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등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며, 경비원에 대한 지도교육이 불철저한채 방치되거나 형식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경비업법 제11조의 3)

따라서 경비업자는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영업소마다 선임해야 한다.

(나)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의 의무(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8조)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의 의무는 ① 경비원에 대한 지도계획 작성과 그 계획에 의거 경비원지도 및 그 기록을 작성하는 것, ②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 및 그것에 의거 경비원 교육실시를 관리하는 것, ③ 관련 서류 기타 경비원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의 기재에 대해 감독하는 것, ④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대하여 경비업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이다.

(다) 자격증 교부

공안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을 교부한다.

공안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 강습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에게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을 교부한다.

(3) 기계경비업무 관리자

(가) 기계경비업무 관리자의 선임

기계경비업자는 기지국마다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운용을 감독하고, 경비원에 대한 지령업무를 통제하고 그 외 기계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계경비업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경비업법 제11조의6).

(나) 자격증 교부(경비업법 제11조의6)

공안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자격증을 교부한다.

① 공안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행하는 기계경비업무관리자 강습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② 공안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해 전항에 열거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자.

(다) 기계경비업무 관리자의 업무

기계경비업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40조).

①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에 의한 경비업무대상시설의 경계,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유지관리, 기타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거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운용을 행하기 위해 경비원 등을 감독하는 것

② 지령 업무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령업무를 통제하기 위해 지령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하는 것

③ 경비원에게 경찰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하여 지도를 하는 것

④ 서류기재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

⑤ 기계경비업무의 관리에 대하여 기계경비업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

IV. 한국 민간경비 자격의 현황과 방향

1.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현황

1) 국가자격증

민간경호·경비관련 국가자격은 개별 법령인 경비업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경비지도사가 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자이다.

2) 국가공인자격증의 현황

민간경호·경비 관련 국가공인 자격은 경찰청 소관으로 (사)열쇠관리협회가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열쇠관리사이다.

참고로 국가 공인 민간자격은 <표 5>와 같다.

<표 5> 국가공인 민간자격

2005년 현재

| 소 관 서 | 자격종목 | 등급 | 자격관리사 | 유효기간 | 연락처 | | |
|------------------------|--------------|---------------|---------------------|-------------------|-----------|----------------|-----------------|
| 재정 경제부 (4) | 신용분석사 | | (사)한국금융연수원 | 04.1.20-07.1.19 | 3700-1642 | | |
| | 대출 심사역 | | | | | | |
| | 국제금융역 | | | | | | |
| | 자산관리사 | | | | | | |
| | | | | | | 05.1.5-08.1.4 | |
| 교육 인적 자원부 (7) | 한자능력급수 | 1,2,3,3II급 | (사)한국어문화 | 05.2.10-08.2.9 | 525-4951 | | |
| | 실용영어 | 1,2,3급 | (사)한국의국어평가원 | 04.1.27-06.1.26 | 780-2360 | | |
| | 실용한자 | 1,2,3,4급 | (사)한국의국어평가원 | 04.1.27-06.1.26 | 780-2360 | | |
| | TEPS(영어능력검정) | 2,2+,1,1+급 | (재)서울대발전기금TEPS관리위원회 | 05.2.10-08.2.9 | 880-1319 | | |
| | 한자실력급수 | 사범,1,2,3급 | (사)한지교육진흥회 | 04.1.27-06.1.26 | 766-7691 | | |
| | 한자급수자격검정 | 사범,1,준1,2,준2급 |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 04.1.27-06.1.26 | 708-4949 | | |
| 행정 자치부 (2) |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 | ESPT-성인1,2급 | (주)이에스피평가아카데미 | 04.1.27-06.1.26 | 365-0572 | | |
| | 옥외광고사 | 2급 | (사)한국광고사업협회 | 03.2.6-08.2.5 | 889-8855 | | |
| 산업 자원부 (7) | 행정관리사 | 1,2,3급 | (사)한국행정관리협회 | 04.2.1-09.1.31 | 3391-0022 | | |
| | 산업기계정비사 | | 대한상공회의소 | 00.12.22-05.12.21 | 2102-3614 | | |
| | 사출금형제작사 | | | | | | |
| | 대선금형제작사 | | | | | | |
| | 전기계측제어사 | | | | | | |
| | 무역영어 | 1,2,3,4급 | | | | | |
| | 샵마스터 | 3급 | | | |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 04.1.17-09.1.16 |
|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 (사)한국열관리시험회 | | | | 05.2.1-07.1.31 | 2675-3436 |

| 소부 | 관서 | 자격종목 | 등급 | 자격관리사 | 유효기간 | 연락처 |
|---------------|--------------|-------------------------|-----------------------|-------------------|-------------------|-----------|
| 정보통신부 (11) | | E-TEST(E-Professionals) | 1,2,3,4급 | 삼성SDS | 03.217-07.2.16 | 3429-5085 |
| | | 정보시스템감리사 | | (사)한국전산원 | 03.217-07.2.16 | 2131-0481 |
| | | PC활용능력평가지험(PCT) | | 파씨티 | 03.217-07.2.16 | 927-7911 |
| | | 인터넷정보검색사 | 전문가,1·2급 | (사)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03.217-07.2.16 | 563-8485 |
| | | 리눅스마스터 | 1,2급 | | 05.1.15-07.1.14 | |
| | | 네트워크관리사 | 2급 |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 04.1.20-08.1.19 | 515-3820 |
| | | PC정비사 | 1,2급 | | 05.1.15-07.1.14 | |
| | | 정보기술자격(ITQ)시험 | A,B,C급 | (사)한국생산성본부 | 04.1.20-08.1.19 | 724-1160 |
| | |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NIT) | | (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 05.2.17-09.2.16 | 3660-2500 |
| | |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 초,중,고급 | 한국정보통신대학교 | 05.2.17-09.2.16 | 550-4360 |
| | 정보보호전문가(SIS) | 2급 1급 | (사)한국정보보호진흥원 | 04.1.20-06.1.19 | 4055-114 | |
| | | | | 05.2.17-07.2.16 | | |
| 보건복지부 (2) | | 점역·교정사 | 1,2,3급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02.4.1-07.3.31 | 950-0154 |
| | | 병원행정사 | |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 02.2.1-07.1.31 | 677-0823 |
| 노동부 (13) | | 기계전자제어사 | | 대한상공회의소 | 00.12.22-05.12.21 | 2102-3614 |
| | | 치공구제작사 | | | | |
| | | CNC기계절삭가공사 | | | | |
| | | 기계설계제도사 | | | | |
| | | 기계 및 시스템제어사 | | | | |
| | | 공작기계절삭가공사 | | | | |
| | | 자동화설비제어사 | | | | |
| | | 산업전자기기제작사 | | | | |
| | | 컴퓨터운용사 | | | | |
| | | 가구설계제도사 | | | | |
| | 문서실무사 | 1,2,3,4급 | 한국정보관리협회 | 00.12.22-05.12.21 | 454-9154 | |
| | 펜글씨검정 | 1,2,3급 | 대한글씨검정교육회 | 00.12.22-05.12.21 | 732-5346 | |
| | 전산세무회계 |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 한국세무사회 | 02.1.17-07.1.16 | 521-8398 | |
| 경찰청 (1) | | 열쇠관리사 | 1,2급 | (사)한국열쇠협회 | 05.1.3-08.1.2 | 442-7981 |
| 삼림청 (2) | | 수목보호기술자격 | 수목보호기술자 | 한국수목보호연구회 | 05.1.15-10.1.14 | 967-5048 |
| | | 분재관리사 | 분재관리사1,2급, 분재전문관리사 | 한국분재조합 | 05.2.01-08.1.31 | 3463-5038 |
| 조달청 (1) | | 구매·자재관리사 | 각분야별 단일등급 |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 04.12.27-06.12.26 | 2271-3691 |
| 7부 3청 | | 50개자격종목 | | 30개기관 | | |

2) 민간경호·경비 관련 민간자격증의 사례

(1) 국제경호협회

국제경호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격종목은 경호원은 3등급(1급, 2급, 3급)과 경호사 단일급이 있다. 자격의 취득, 평가시험, 자격관리, 검정방법 등은 경호자격운영규정(1994.4.12제정)과 경호자격 운영보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¹²⁾

시험응시료와 자격발급비, 가입비, 연회비 등은 <표 6>과 같다.

<표 6> 국제경호협회 자격증 발급비용 등

| 구 분 | 이론시험응시료 | 실기시험응시료 | 자격발급비 | 인증심사료 | 협회가입비 | 협회연회비 |
|-------|---------|---------|---------|---------|--------|--------|
| 경호원1급 | 200,000 | 200,000 | 300,000 | 200,000 | 50,000 | 60,000 |
| 경호원2급 | 100,000 | 100,000 | 250,000 | 100,000 | 50,000 | 60,000 |
| 경호원3급 | 50,000 | 50,000 | 200,000 | 50,000 | 50,000 | 60,000 |
| 경호사 | 200,000 | 200,000 | 300,000 | 200,000 | 50,000 | 60,000 |

* 자료: 국제경호협회(2005:436); <http://www.ibga.co.kr>

시험에 합격하여 경호원 및 경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걸쳐 협회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다. 회원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국제경호협회 부설 아카데미에서는 경호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과정 교육훈련 연수생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있다.¹³⁾ 연수기간은 3개월 (240시간)이며, 1일 평균 4시간(월-금요일) 교육한다. 등록비 및 교재비, 피복비는 총 284만원이다.¹⁴⁾

국제경호협회의 경호사 및 경호원 자격취득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경호사 및 경호원 자격취득 현황

| 구 분 | 경 호 사 | 경 호 원 | | | 비 고 |
|------|-------|-------|------|-----|----------|
| | | 1급 | 2급 | 3급 | |
| 1994 | | 1 | 2306 | | 1,2급제도시행 |
| 1995 | | 16 | 3750 | | |
| 1996 | | 9 | 460 | | |
| 1997 | | | 472 | | |
| 1998 | | | 360 | | |
| 1999 | | | 4 | 633 | 3급제도신설 |
| 2000 | | | | 521 | |

2005년 9월 현재

12)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제경호협회(2005:425-445)을 참조할 것

1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bga.co.kr>을 참조할 것.

14) 이중 교육비는 210만원(1월기준70만원), 협회가입비 5만원, 협회연회비 6만원, 자격응시료 10만원 자격발급료 20만원, 교재(이론, 실기) 및 피복비 33만원이다.

| 구분 | 경호사 | 경 호 원 | | | 비 고 |
|--------|-----|-----------|----|-------|------------------|
| | | 1급 | 2급 | 3급 | |
| 2001 | 1 | | | 750 | 경호사제도신설 |
| 2002 | | 4 | | 274 | |
| 2003 | 37 | 1 | | 346 | |
| 2004 | 45 | 1 | 7 | 296 | 수시시행 |
| 2005 | 12 | 2 | | 124 | 전국통합3급시 협최초시행 |
| 합계(명) | 95 | 9 | 9 | 1,793 | |
| 총합계(명) | | 10,0432 명 | | | |

* 자료: 국제경호협회자격평가원

(2)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격종목중 민간경비와 관련된 것은 PIA사실정보 탐경사, 특수경호사 등이 있다. 이중 PIA사실정보탐경사는 10월16일 제1회 시험이 있다.¹⁵⁾

(3) 대한민간조사연합회

대한민간조사연합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격종목은 민간조사원1급, 2급, 3급이 있다.¹⁶⁾ 현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다.

2. 민간경비 민간자격제도의 방향

국가자격과는 달리 민간자격은 자격의 공신력을 민간부문 스스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의 산업계와 사회의 통용성,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설했던 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민간경비 관련 민간자격은 (사)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든지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개인 또는 법인격없는 단체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경비협회가 단독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한국경호경비학회나 경비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연계하는 방안은 자격제도에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동시에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과 검정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자격의 활성화여부는 경비업체의 활용과 수용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경비업체가 회원사인 경비협회가 중심이 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경비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민간경비 자격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인 경비업체가 적극적

15) 자세한 내용은 <http://www.rok pia.com>을 참조할 것.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pi.or.kr을 참조할 것.

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한국경비협회가 자격관리자가 된다면 경비산업 현장에서 인정받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자격취득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업으로 최대한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자격취득자에 대한 처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비원1급-4급, 경비사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반장이나 대장의 경우는 최소한 경비원2급이상 또는 경비사 자격소지자로 규정하는 것 등이다.

셋째, 자격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전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신설할 수 있는 것은 각 시설별 경비자격증, 경호자격증, 교통유도자격증, 호송경비자격증, 특수경비자격증, 기계경비자격증, 방법설비사자격증 등이다.

넷째, 한국경비협회, 경비업체, 관련학과 교수 등이 협의하여 직무분석을 한 후, 자격취득 예정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추출하여 자격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능력과 책임성, 자율성 등을 감안하여 경호원, 경비원 1급, 2급, 3급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다섯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 자격취득 수요자들이 자격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자격관리자는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민간경비원 민간자격을 급수에 따라 직접검정하는 방법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검정 과목을 면제하는 간접검정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격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또는 대학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

V. 결 론

최근 경비업체가 2천2백여개를 넘고 경비원도 11만명을 넘어선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영세한 업체의 난립은 결국 저가입찰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이직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해결방안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안성조·안황권, 2005: 156).

우선 경비원의 자질문제와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중의 하나는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전문적인 자격증은 결국 고객을 보호하고 경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민간경비는 경비업무가 다양하고 경비업체의 규모나 수준이 평균화되어 있지 않고 편차가 심하여 고객이나 일반 대중에게 높은 신뢰감과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자격의 등급기준 설정시 참고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http://www.krivet.re.kr/>

민간경비분야의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관련 민간자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경비 자격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인 경비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체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전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신설할 수 있는 것은 각 시설별 경비자격증, 경호자격증, 교통유도자격증, 호송경비자격증, 특수경비자격증, 기계경비자격증, 방법설비사자격증 등이다.

넷째, 한국경비협회, 경비업체, 관련학과 교수 등이 협의하여 직무분석을 한 후, 자격취득 예정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추출하여 자격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 자격취득 수요자들이 자격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공배완(2005). "민간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제고", 경호경비연구 제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국제경호협회(2005). 「경호자격규정집」.
- 김철수(2004). 지식정보화시대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 박동균(2002).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제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안창훈(1999). 시설경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안성조·안황권(2005). "경비원의 직무환경과 사기 및 이직의사와의 관계", 「경호경비연구」 제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안황권(2004). "특수경비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7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안황권·강민완(2005). "민간경비원과 경찰의 협력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 「경호경비연구」 제10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안황권·안성조(2005). 경호경비법원론, 서울: 동문.
- 이윤근(1999).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제27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선태(2000). 민간경비산업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社)全國警備業協會(2005). Security Time, vol.311(2005.7)
- 星澤哲也(1983). 「新警備業法令集」.東京:東京法令出版
- (社)全國警備業協會(1986).「警備業法解説」.
- Becker, Donald C.(1985). Security Administration. Illinois: Charles C Thomas.
- Cunningham, Willam C., John J. Stauchs, Clifford W. Van Meter(1990).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II. Butterworth-Heinemann.
-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Protection Officers(1998). Protection Officer Training Manual, 6th edition.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Johnson, Brian R.(2005). Principles of Security Management. NJ: Pearson Prentice Hall.
- Simonsen, Clifford E.(2000). Private Security in America. NJ: Prentice Hall.

ABSTRACT

A Study for the Certified Security Certification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Ahn, Hwang Kwon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is concerned on Why The Certified Security certification is needed and How to control the security quality to get better service to the clients.

Theses days are required The Certified Certificate in all the industry. And in this point of view, the certified certificate is a kind of confirmation by an authority to the person who has how much special knowledge and practice in a certain field. Moreover, in the functionalism society the certified certificate system would be very positive effect to the related industry and society as official measurement by an authority.

The security is freedom from fear and anxiety. Which means the security can not be operated in isolation from citizen's safe-living expectation, and which is also dealing with valuable human being's life. For getting the better purpose the security industry employees should have more organized special training and education.

As my understanding the certified certificate exam system is the confirmation by an authority, the certified certificate is only neutral evidence to get the confidence and credit from the clients. In this point of view the core point is How to control The Certified Certificate by a credied authority.

[Key Words : private security, certified security certification, security industry, the certified certificate exam system, organization of special training and education]